

「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남진삼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10. 8.
- 회부일자 : 2024. 10. 14.
- 상정일자 : 2024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확산되고 있는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에 따라 군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맨발걷기길 활성화에 대한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맨발걷기길 장소 조성(안 제5조)
- 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에서 ‘지자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’ 고 규정하고 있고, 제6조에서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5조(맨발걷기길 조성 장소)에서는 관내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함.

< 맨발걷기길 조성 가능 장소 >

1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2.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3.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4.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

- 안 제6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하고 주관부서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<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>

1.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
2.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,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·보수
3. 세족대, 신발장, 해충퇴치기, 안내표지판, 쉼터 등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·관리
4.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5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5. 종합검토의견

-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과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